의 안 번 호

1582

[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]

# 검 토 보 고 서

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1. 8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11. 8.(금)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12. 2.(월)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2020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 3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(1) 목적 : 현 청사 노후 등에 따른 신청사 건립 필요 재원 확보

(2) 설치년도 : 2008년

나. 조성현황 (단위 : 천원)

2019년도 말	2020년도 조성계획			2020년도 말	-3
조성액	수 입 (H)	지 출 대	증 감 라=나-따	조 성 액 마=⑦+郎	비고
29,732	416	0	416	30,148	

#### 다. 자금운용계획

수 입 계 획			지 출 계 획		
계	예치금 회수	이자수입	계	예치금	
30,148	29,732	416	30,148	30,148	

(단위: 천원)

# 4. 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

## 5. **검토의견** : 없음

# 근 거 법 규

##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 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 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